

의안번호	2201076
의 퇴 인	소병훈 의원
회 답 일	2024. 7. 3.
추계번호	24C13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6조의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각각 무인정보단말기와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노인의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6조의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되고, 이들이 노인의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및 동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

- 또한,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동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르면, 해당 행위자에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
 - 같은 방식으로 노인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에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포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이 해당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이 명시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와 제공 시점,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개정안 제26조의2제3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음¹⁾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1)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범위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하기 곤란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